

FSS/2206-05 :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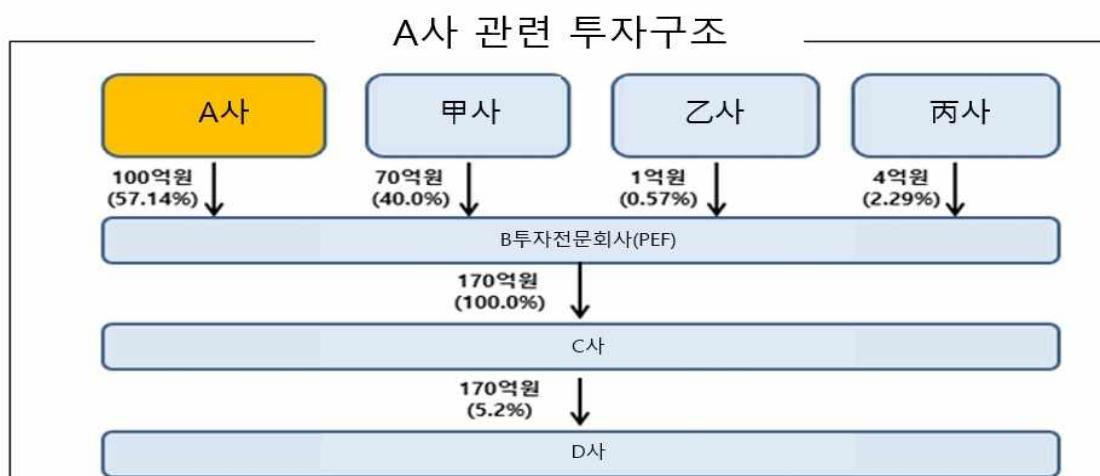
- ▣ 쟁점 분야 : 관계기업투자주식
-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 ▣ 결정일 : 2021년
- ▣ 회계결산일 : 2015.1.1.~2017.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14년 투자전문회사(PEF)인 B사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출자하여 57.14%의 지분을 취득하고 사실상 지배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관계기업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B사는 투자목적회사인 C회사를 설립하였고, C사는 D사의 지분을 5.2% 취득하였다. 또한, B사와 C사는 특수분야회계처리기준 제5003호(집합투자기구)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지분증권을 각각 취득가격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회사가 B사에 투자한 금액이 회사 총자산의 17%에 해당하는 등 관계기업투자주식이 재무제표에서 중요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었고, 회사의 재무담당임원은 B사가 최종적으로 D사에 투자하여 큰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련회계처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회사는 ’15년~’17년 3분기 기간 중 회사(K-IFRS 적용대상)와 관계기업의 회계처리기준이 달랐음에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K-IFRS로 수정하지 않고(공정가치 변동 미반영) 지분법을 적용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회사의 회계처리기준(K-IFRS)과 관계기업의 회계처리기준(기준서 제5003호)이 달랐음에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수정하지 않고 지분법을 적용한 결과, 연결재무제표에 D회사 투자지분의 공정가치 하락에 따른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못하여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문단36에 따르면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기업의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 기업이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할 때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의 회계정책을 기업의 회계정책과 일관되도록 해야 한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8에 따르면 자산의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자산은 손상된 것이며, 동 기준서 문단 12~14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몇 가지 징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징후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정식으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지분법 적용시 관계기업 재무제표에 적용된 회계정책을 회사의 정책과 일치시키지 않아 손상차손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관계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 했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315(기업과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과 평가) 문단A2, 문단A22 및 회계감사기준 330(평가된 위험에 대한 감사인의 대응) 문단27에 따르면, 질문은 기업 내부 또는 외부의 재무나 비재무 분야의 관련지식이 있는 자로부터 정보를 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질문만으로는 경영진 주장 수준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것 또는 통제의 운영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감사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만약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중요한 주장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감사인은 감사증거를 추가로 입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감사인은 손상검토 수행시 B사의 재무제표상 순자산 가액에 지분율을 곱한 값과 회사 재무제표상 관계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을 단순 비교한 결과 차이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손상의 징후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회사에 B사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요청하였으나, B사는 감사보고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회사 회계팀장의 답변만 믿고 B사의 회계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B사가 실제로는 외부감사를 받고 있었고, 재무제표가 기준서 제5003호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점, D사 지분의 공정가치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5. 시사점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회사의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하는 경우, 지분법 적용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재무제표에는 회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질문을 할 때 관련지식이 있는 자에게 하여야 하고, 질문만으로는 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중이라거나,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다는 것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제공되지 않음에 유의하는 한편, 충분한 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